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22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 : 김홍걸 · 어기구 · 김주영

윤영덕 • 이규민 • 이병훈

김병주 · 김경만 · 박홍근

민형배 · 이용우 · 강병원

정청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일교육주간의 지정,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지역통일교육센터의지정 요건,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통일교육 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현행법 제4조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일교육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므로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u>장려되도록 하여야 한다.</u>